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55
----------	-----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5일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1명)

찬 성 자 : 김태수·이명희·남재경·강구덕·
오봉수·유 용·최관술·김정태·
김미경·문형주·조규영·박양숙·
김선갑·전철수·이윤희·김혜련·
장우윤·한명희·성백진·김용석
(서초) 의원(20명)

1. 제안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중 “고급형 택시”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운임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고급형 택시요금의 요금 결정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고급형 택시요금을 제외함(안 제3조제2항1호)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2. 도시가스요금(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 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p>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택시 요금 및 도시철도요금)</p> <p>2. 도시가스요금(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p> <p>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p>	<p>제3조(기능) ① ----- ----- -----</p> <p>② ----- -----</p> <p>1. -----(-----,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 -----)</p> <p>2. ----- ----- ----- -----</p> <p>3. ----- ----- ----- -----</p>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3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호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상훈